

# 영미목록규칙 제2판의 개정규칙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찰

정 용 선\*

.....<차 례>.....	
I. 서 론	2. 인명(제22장)
II. 일반적인 개정	3. 지명(제23장)
III. 기술(제1부)	4. 단체명(제24장)
IV. 표목, 통일서명, 참조(제2부)	5. 통일서명(제25장)
1. 검색요소의 선정(제21장)	V. 결 론
.....	

## I. 서 론

영미목록규칙 제 2 판(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AACR 2)이 1978년 12월에 발간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5기관이 참여로 AACR 합동조정개정위원회가 1974년에 발족되어 개정작업이 착수되었으며, 개정작업 진행 중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는 전문 문헌을 통하여 계속 발표되었다. 1975년 영어권의 4개 주요국가 목록기관인 British Library(BL), Library of Congress(LC),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NLA), National Library of Canada(NLC)는 1980년 1월 1일을 기하여 앞으로 간행될 AACR 2를 채택하고 기존목록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sup>1)</sup>

전문분야에서는 개정판에 대한 배경과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논평하고 개정된 규칙의 실제 목록상의 적용, 기존목록과의 통합, 기존목록을 동결하고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1. Carol R. Kelm(1978),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2, no. 1, p.29.

AACR 2를 완전히 채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AACR 2 채택에 관한 찬반의 의견은 마침내 1978년 8월 3일 미국도서관협회본부 회의에서 AACR 2의 채택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동월 12에 AACR 2 채택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sup>2)</sup> NLC와 BL도 뒤 이어서 AACR 2의 채택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sup>3)</sup>

AACR 2의 채택의 연기는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과 OCLC를 포함한 미국의 도서관 사회의 압력에 기인한다. 미국의 연구도서관은 AACR 2 이전의 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기존목록과 개정된 신규칙 사이에 상당한 상이점이 있으므로 전문분야의 실무자는 기존목록을 동결하고 AACR 2를 채택하는데 있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연기한 것이다. AACR 2를 완전히 적용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표목의 37%를 포함한 전체 MARC 기록의 49%가 정정되어야 하며<sup>4)</sup>, 이 문제는 예산, 서지체제, 제도상의 기획의 측면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LC는 이미 '점차적인 적용 정책'을 발표하고, 신규칙을 적용하여 새롭게 설정되는 표목과 기존표목 사이에 배열상 무리가 없는 한 기존표목을 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존표목 사용의 범위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였다.<sup>5)</sup>

AACR 2 채택의 연기는 내용상의 결점보다는 채택의 시기, 운영상의 변화 등에 있는 것이다. 영국의 Gorman<sup>6)</sup>과 호주 Cathro<sup>7)</sup>는 이러한 결정은 AACR 2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앞으로 1년간 MARC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될 기록의 증가를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논평하고, 이러한 연기는 국제

2. Marilyn H. Jones(1979), "Year's Work i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1978,"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3, no.3, p.248.

3. Ibid.

4. Joe A. Hewitt and David E Gleim(1979), "The Case for not Closing the Catalog," *American Libraries*, 10, no.3, p.118.

5. Wesley Simonton (1979), "An Introduction to AACR 2,"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3, no.3, p.336.

6. Michael Gorman(1978), "...And Now, from the Wonderful Folks who Gave You Superimposition," *American Libraries*, 9, no.10, pp.620~621.

7. Warwick S. Cathro(1978), "Can AACR II Survive the Library of Congress?" *Library Journal*, 103, no.19, pp.2163~2165.

협동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AACR 2의 채택의 연기와 미국이 국가적 수준에서 행하고 있는 ‘점차적인 적용 정책’(policy of gradual adoption)은 비록 AACR 1(북미판)의 첨가정책(policy of superimposition)과 성질상 차이가 있지만, AACR 2의 적용이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도서관은 AACR을 기초로 하여 양서를 목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AACR 2의 적용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도서관에서 연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ACR 2에서 변경 또는 추가개정된 사항을 지적하여<sup>8)</sup>, 개정된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목록상의 통용 및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 II. 일반적인 개정

AACR 2는 연구도서관 뿐만 아니라 중소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을 대상(0.1)으로 제정된 목록규칙이며 1908년 이래로 미국과 영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조항을 통합하여 70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록규칙이다. 기술에 있어서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동등하게 다루기 위하여 ISBD(G)<sup>9)</sup>를 기초로 하고, 그 이외의 ISBD 프로그램을 참작하여 제정하였으며, 기입과 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AACR 1보다 파리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개정하고, Eva Verona의 단체명 기입과 표목에 대한 연구<sup>10)</sup>, UBC의 개인명의 개정<sup>11)</sup>,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기법 및 그 외의 표준을 참작함으로써 목록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8. 이 논문에서 지적된 AACR 1의 규칙은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북미판(North American Text)을 기초로 한 것이며 규칙번호도 이에 해당되는 번호이다.

9.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1977), *ISBD(G)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0. Eva Verona(1975), *Corporate Headings: Their Use in Library Catalogue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1.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1977), *Names of Persons: National Usages for Entry in Catalogues*, 3rd ed.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AACR 2는 종래의 카아드목록과 책자목록 작성 뿐만 아니라 기계가독목록도 중요한 목록형태로서 포함시켜 다양한 목록형태를 전제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AACR 2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 1부를 기술(description), 제 2부를 검색요소인 표목, 통일서명 및 참조(Headings, Uniform Titles, and Reference)의 순서로 하고 있다(0.3). AACR 1 이전의 목록과정은 기계화 이전의 재래식 목록순서이므로 먼저 기본기입의 표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서지기술을 하였는데, 이것은 ISBD 이전의 목록순서이므로 변경된 것이다. 기계가독목록에서는 ISBD가 검색요소에서 독립되어 완전한 서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검색요소는 제 2부의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AACR 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77년에 발간된 ISBD(G)의 채택이다. 과거의 단행본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비도서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서관자료가 단행본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도록 제정된 것이다. ISBD는 여러 종류의 형태에 따라 그 특이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종의 ISBD를 채택하는 경우 각종 자료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모든 자료의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ISBD(G)를 제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모든 도서관자료를 기술할 수 있도록 제 1부 기술이 구성되어 있다. AACR 2에 의해서 목록된 기술과 AACR 1 제 6 장의 개정규칙에 의해서 목록된 기술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AACR 2가 기초로 한 ISBD(G)는 그 배경과 목적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AACR 2의 구성과 각규칙에 대폭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ISBD(G)에 의해 모든 도서관자료를 동등하게 다루는 원칙은 기술 뿐만 아니라 기입과 표목의 선정에도 똑 같이 적용되어 있다. 이것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 타당하여 비도서자료의 증가에 대응한 실제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어 모든 도서관자료는 기입과 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통일된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AACR 2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선택과 택일규칙(0.7, 0.9)이다. 도서관목록은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도서관의 종류, 장서의 종류, 목록의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지체제가 필요

하다. 목록규칙이 국가 단위, 국제 단위로 표준화됨에 따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Cutter의 이용자 중심의 목록 철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AACR 2는 이러한 갈등을 인식하고 목록의 표준화를 성취하는 동시에 개개 도서관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어느 규칙보다 신축성을 강조하고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칙은 ‘Optional addition’ ‘Optionally...’ 또는 ‘Alternative rule’로 표현되어 기술과 검색요소의 양부에 다 설정되어 있다.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은 이론상 합리적이거나 실제 목록에 적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AACR 2에서 각 목록기관은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명확한 계획과 지침을 설정하여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어떤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을 적용하는지 기록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AACR 2는 기본기입의 개념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칙과 달리 많은 신축성을 보이고 기본기입의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시인하고 있다.

AACR 2를 인용하면 :

기본기입과 별도 표목 : 제 2 부(표목, 통일서명과 참조)의 규칙은 기술된 자료에 대하여 기본기입을 만들고, 부기입으로 보충된다는 제안에 의한 것이다. 별도표목 기입(예 : 기술된 모든 자료에 대한 동등한 기입 방법)의 사용문제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나 구체화 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함축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에서 기본기입과 부기입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한 도서관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입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 21장(검색요소의 선정)을 지침으로 삼아 편목하도록 권고한다(0.5).

구미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본기입 원칙을 보유하고 있으나(제 21장) 기본기입과 부기입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AACR 2를 추종하는 도서관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또한 AACR 2에서 tracing의 정의를 종래의 ‘부출지시’의 의미에서 ‘표목지시’라는 뜻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래의 기본기입과 부기입의 구별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AACR 2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은 저자개념이다. 목록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저자개념이 좁아져서 개인저자만을 저자로 인정하고 단체명에 대해서는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기본기입으로 허용하고 있다.

AACR 2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기존규칙이 각 장이나 각 규칙을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신규칙은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여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Ⅲ. 기 술(제1부)

제 1부 기술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모든 도서관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칙을 다루고 있다. AACR 1이 단행본 중심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단행본에 대해서 완전한 서지적 기술이 설명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단행본과 상이한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해 AACR 2는 과거의 단행본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비도서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가 동등하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 1부 기술의 구성에 있어서 제 1장은 어느 특정한 자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규칙을 다루고 있다. 제 1장에서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완전한 기술에 대한 규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2장부터 제 12장까지는 간단하게 자료의 특수성에 따라 특이한 사항에 대한 규칙만을 다루고 있다. 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특이한 사항과 요소는 해당되는 장에서 완전히 설명되고 예도 제시되어 있다.

제 1부 기술에서 다른 각 장의 도서관 자료는 :

제 2장 단행본, 팜플렛, 낱장으로 된 인쇄물(고서등)

제 3장 지도 자료

제 4장 필사본(필사본의 합집도 포함)

제 5장 악보

제 6장 음반

제 7장 영화 및 비디오 녹음

## 제 8 장 사진 자료

## 제 9 장 기계가독 데이터 파일

## 제 10 장 입체적인 기물 및 유품

기술부류 목록작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목록하는 자료의 특수성에 따라 제 2 장부터 제 10 장에서 지침을 찾고, 제 1 장의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칙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각 자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부규칙 OA). ISBD(G)의 채택으로 제 13 장(분출)을 제외한 각 장의 기술의 조직은 8개 주요 사항(8 major areas)으로 구성되어 각 사항과 각 요소 사이는 일관된 구두법을 사용하고,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1. 서명 책임 표시
2. 판차
3. 자료(또는 출판물의 형태) 특기
4. 출판, 배포 등
5. 실제 기술
6. 시리즈
7. 주기
8. 표준번호 및 보급조건

각 사항의 요소(element)는 세칙으로 구분하여 부규칙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 장에 있어서 각 사항과 각 요소는 같은 순서로 나열되어 같은 번호가 배당되어 있으므로 조기성이 강조되고, 내부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자료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고, 각 규칙의 적용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출판사항은 규칙 1.4조이며, 음반의 출판사항은 규칙 6.4조이고, 마이크로 자료의 출판사항은 11.4조로 되어 있어 부규칙 번호 4는 각 장에 있어 출판사항을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표시하고 있다. 자료의 특수성에 따라 특이한 사항은 해당되는 장에서 각각 완전히 설명되고, 예도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실제기술사항(physical description area)은 자료의 외형적인 실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자료에 따라 각각 특이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제 1 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각 해당 장의 부규칙 번호 5에서 완전히 별도로 취급되어 있다.

기술의 출처는 ISBD(G)의 채택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표제지 중심의 기술에서 주요 정보원(chief source of information)으로 변경되어 있다. 제 1 부의 각 장은 목록하는 자료의 형태와 특수성에 따라 정보원을 독립시켜서 다루고 있으며, 각 자료의 형태에 따라 주요 정보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각 사항(area)마다 각각 정보원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의 규칙에 열거한 각 사항의 정보원은 우선 순위가 지시되어 있다. 또한 AACR 2는 ISBD(G)의 원칙에 의해 축적간행물의 주요 정보원이 최신 간행물의 표제지에서 창간호 또는 목록하는 간행물의 첫호 표제지로 변경되어 있다. 주요 정보원에서 ‘현저한’(prominently)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명, 책임표시 사항과 관차사항에서 사용된 공식적인 표현이다(0.8). 이 ‘현저한’의 개념은 검색요소를 결정하는 데도 적용되어 AACR 2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도서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목록기술을 어느 정도 상세히 하는가의 문제는 목록의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Cutter도 일찌기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기술은 간이, 중간, 완전(short, medium, full) 기입으로 구분하도록 그의 규칙에 제시하였으며<sup>12)</sup>, 실제로 미국 도서관에서는 기술에 관한 표준규칙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목록의 목적과 상관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여 자료의 식별에 필요한 최소의 기입만을 채택하였다.

AACR 2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서지표준화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의 종류, 장서의 목록 형태에 따라 목록기관에서 기술의 상세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의 수준(level of description)을 3 수준으로 구분하여 택일규칙을 마련하고 있다(0.29). 첫째 수준은 간이 기술이며, 두번째의 수준은 중 또는 대도서관에서의 표준기술이며, 세번째의 기술은 목록규칙이 마련한 모든 서지적 기술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 3 수준의 기술은 ① 특정도서관의 자료 전체에 동등하게 적용되거나, ② 한

12. Charles A. Cutter(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92~105.



도서관에서 특정한 자료에 따라 3 수준을 각각 적용하는 지침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 도서관의 자료 중에서 교과서, 일반적인 가정관리에 관한 자료, 오락, 연소자를 위한 간행물 등 학술적이 아닌 간행물에 대하여는 간이목록을 적용하고, 귀중본, 희귀본, 고서에는 세밀목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는 표준기술을 적용한다. 기술의 3 수준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정보망에 기술의 수준을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1974년 발간된 AACR 1 제 6 장(단행본)의 개정은 ISBD(M)<sup>13)</sup>에 규정된 구두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개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AACR 2의 기술에서 ISBD(G)의 채택으로 인한 용어의 변화는 비교적 적다. 주요 변경은 대조사항(collation area)이 실체기술(physical description area)로 개정되고, 저자성(authorship)이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개정된 것이다. 대조사항은 종래의 단행본 중심의 기술에 있어서 적합한 용어이나 비도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적합할 광범위한 용어인 실체기술 사항으로 변경되어 있다. 실체기술 사항의 첫번째 요소는 'extent of item(including specific material designation)'이라 되어 있다(1.5B). 이것은 AACR 1의 대조사항이라는 용어가 AACR 2에서 실체기술 사항으로 변경되고, 광범위하게 특수자료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제 2 장 단행본을 제외한 각 장에서 공통적으로 특수자료의 첫번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래의 저자성 표시(statement of authorship)가 책임성 표시(statement of responsibility)로 변경된 것은 저자의 이론이 발전되고 저자의 개념이 개인 저자로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개인명과 단체명을 포함하여 일괄 사용할 수 있는, 비도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용어이다. 이 개념은 시리즈 사항, 주기 사항에까지 연장되어 저자성 대신에 책임성으로 대치되고 있다. 별서명(alternative title)이 AACR 1 제 6 장 개정규칙에서는 기타 서명(other title)에 속하였던 것이 AACR 2에서는 본서명의 일부분으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서명 정보(other title information)의 범위는 좁아지고 있다.

13.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1974),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 1st standard ed.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새로운 사항 및 요소로서 일반 자료 명칭(general material designation : GMD)과 자료(출판물의 형태) 특기사항(material (or type of publication) specific details)이 있다. GMD는 ISBD(G)가 채택한 혁신적인 개발로서 자료의 형태와 특수성에 따라 자료의 명칭을 본서명 다음에 포함시키고 있다. GMD의 사용은 광범위한 자료를 식별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filmstrip, 영화, 음반과 특정한 시청각 교육 자료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료에 적용하도록 선택 규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목록기관에서 임의로 이 사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칙은 AACR 2 전체를 통해서 북미와 영국 간에 어휘 사용에 있어 일치를 보지 못한 규칙(1.1CI)으로 GMD의 리스트가 북미와 영국용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나열되어 있다. 북미는 어휘에 있어 자료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명칭[map], [objects]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이 자료를 총괄할 광범위한 어휘 즉, [cartographic material]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 1부 기술에 있어서 제 2장(단행본)과 제12장(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전장을 통해서 해당된 특수자료의 명칭 즉, [map], [globe] 등이 아닌 일반자료 표시 [GMD]로서 예가 제시되어 있다. LC, BL, NLA, NLC는 기계가독목록의 서지기록에 있어 적절한 GMD사항을 포함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으나, GMD의 명칭에 있어서는 목록기관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sup>14)</sup> LC는 종전의 관습을 계속 유지하며, 마이크로 자료를 추가하여 GMD사항에 포함하기로 하고 있다.<sup>15)</sup>

다음으로 ISBD(G)의 개발로 인한 새로운 사항은 자료(또는 출판물의 형태) 특기사항(material (or type of publication) specific details)이다(1.3). AACR 2에서는 ISBD(G)를 채택함으로써 숫자로 표시되는 지도(제3장)의 축척(scale) (3.3)과 연속 간행물(제12장)의 권호와 창간연월일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며(12.3), 다른 자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0.25). 이 사항에서 지도의 축척 표시는 ISBD(CM)<sup>16)</sup>에 의한 것이고, 연속간행물의 숫자

14. Simonton(1979), p.325.

15. Ibid.

16.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1977), *ISBD(C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Cartographic Materials*.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표시는 ISBD(S)<sup>17)</sup>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 사항은 다른 사항에서 다루어지게 적합하지 않은 특이한 도서관 자료의 특수성을 표시하고 있다. 지도가 연속간행물일 경우는 제 3 사항에 두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으나 지도의 축척을 기입하고 다음에 연속간행물의 권호와 창간연월일의 순서로 표시된다.

AACR 1에서 사용된 기입체(body of the entry)라는 용어는 AACR 2에서 삭제되어 있다. AACR 1에서는 목록기입 중 서명으로 시작하여 출판사항으로 끝나는 부분을 기입체라 하고, 다음 사항인 대조사항은 새로운 절(section)로 시작하였으나 AACR 2에서는 계속 마침표-빈칸-붙임표-빈칸(. -)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AACR 2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시리즈 사항이다. 제래의 규칙은 시리즈 사항의 간결성을 강조하여 자료에 나타난 시리즈명이 압축되거나 수정되어 검색할 수 있는 표목형식으로 수정되어 시리즈 사항에 기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AACR 2에서는 시리즈 사항에 시리즈명과 책임성 표시를 포함하여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간결성(brevity)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기타 서명(1.6D1) 책임성 표시(1.6E1) 등은 시리즈를 식별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항에서 하위 시리즈(subseries)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본기입의 규칙과 부합되는 것으로 AACR 1의 연속 간행물과 시리즈에 관한 규칙(6B)이 제거되어 기본기입이 단채명에서 서명기입으로 변한 데에 기인한다.

AACR 2의 주기에 대한 규칙을 기존규칙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상 규정상의 변화라기 보다는 배열과 표현방법에 있는 것이다. 제 1 장의 주기사항에는 모든 도서관자료에 적용되는 부규칙 21개가 기입하는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으나, 각 장에서는 (제 2 장부터 제 12 장까지) 해당되는 자료에 필요한 주기만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자료의 성질상 관계가 없는 주기에 대한 규칙은 각 장에서 삭제되어 있다. 주

17.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1977), *ISBD(S):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Serials*,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기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입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기입을 하기 위하여 다른 주기와 결합할 때도 있다. AACR 1의 '반드시 필요한 주기'(144B)는 AACR 2에서 '자료의 성질과 기입의 목적'(0.27)에 따라 특정도서관의 목록정책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장 끝에 있는 마지막 규칙 :

#### 9. 보 유(補遺)

10. 여러 종의 자료로 형성된 아이템

11. 영인판, 사진 복사 등 그 외의 재판

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 지침이다.

제11장부터 제13장까지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칙으로서 제11장 마이크로 자료, 제12장 연속 간행물, 제13장 분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장은 전장과 결합하여서 사용된다. 즉, 마이크로 자료가 원작인 경우 제11장은 제1장과 함께 사용되며, 마이크로 자료가 단행본의 복제인 경우는 제11장을 사용하되 제2장을 참조하여야 하며, 특히 주기사항을 기록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기술은 수중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목록하기 때문에(0.24) 원작에 대해서는 주기사항에 기술하게 된다. 영인판, 사진 복제판 등도 AACR 2의 제1장의 기본방침에 의해 수중에 있는 자료를 기술하여 원본에 관한 사항은 주기사항에 기록된다. 음반의 기술에 있어서도 마이크로 자료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수중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목록작성을 하게 된다. 서명이 없는 합집에 대해서는 출판물 자체를 기술할 것인가, 또는 합집의 내용을 기술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로 되어 있다. AACR 2 이전에는 후자를 기초로 기술하였으나 세계서지통정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서지 기관은 전자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AACR 2는 선택규칙을 마련하고 있다(6.1G1). 같은 원칙은 영화(7.1G1) 지도(3.1G1)에도 적용되어 있다.

연속간행물의 기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AACR 1 이래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LC는 1974년 ISBD(S)<sup>18)</sup>의 예비판에 의하

18.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1974), *ISBD(S):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

여 신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불행하게도 기술의 첫번째 요소인 본지명(distinctive title)과 같은 변화는 현시점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여 실패하게 된 것이다. ISBD(G) 원칙에 의해서 연속간행물을 정리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타당하고, 긴 안목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단일배열을 하는데 있어 본서명(title proper)이 고유성이 없는 일반적인 서명(generic title)인 경우(예: 'Bulletin,' 'Journal' 등) 2차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것은 AACR 2 제21장에 의해서 기본기입이 단채명에서 서명기입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야기되는 현저한 문제이다.

CONSER도 AACR 2가 ISBD(G)에 의거하여 연속 간행물의 목록법이 제정된 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ISDS의 유일지명(key title)<sup>19)</sup>은 본서명(title proper)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책이나 이것은 서지적인 서명 보다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서명이며, 본지명(distinctive title) 보다도 더욱 인위적인 것이다.

AACR 1 이전에는 권다본(卷多本: multi-volume publication)의 정보원은 출판물의 첫권에 기재된 서지사항을 택하였는데 비해 연속간행물은 목록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간행물에 기재된 서지사항을 기재하고 다른 권과의 차이는 주기사항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169B).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이 아니므로 ISBD(G)의 원칙에 의해 AACR 2에서 연속간행물도 간행물의 첫권을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12. OB). AACR 2는 AACR 1과 달리 간행물을 식별하는 요소로서 실제로 발행된 날짜와 권호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연속간행물의 창간호에 매겨진 날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AACR 1 이전에는 개개도서관의 소장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graphic Description for Serials*. prelim. ed.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 유일지명(key title)은 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ISDS)에 의해서 연속간행물에 매겨진 유일한 이름을 가리키며,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과 연결되어 있다. 유일지명은 본지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지명이 일반적인 보통명사로 되어 지명의 유일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적인 정보(예: 발행자, 발행지, 창간날짜)를 보기에 수 있다.

Technical Journal—Association of Teachers in Technical Institution Journal—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AACR 2에서는 서지사항을 기록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한 ISBD(G)의 채택으로 추가경정된 사항은 기타서명(other title)의 기재, 책임성 표시(statement of responsibility)의 기재이다. 출판, 배포사항은 창간호 사항에 계속하여 기술하며, 창간호의 출판연도가 세번째 사항에 표시되어 있어도 출판사항에 생략하지 않는다.

연속간행물은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상황이며 출판물의 형태가 아니므로, 모든 도서관자료에 적용되어 연속간행물의 규칙과 자료의 형태에 따른 전장(제2~10장)과 결합하여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지도가 연속간행물인 경우 제3장을 기초로 하여 제12장으로 보충될 것이며, 인쇄된 연속간행물은 제2장을 기초로 하여 제12장을 사용하게 된다.

제13장 분출은 출판물을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출판물과 연결시키는 장치이다. AACR 1 이전에 부속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대시기입(dash entry)은 AACR 2에 이르러 포기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저작은 독립된 저작으로서 관련된 저작(21.28)에서 다루거나 또는 독립되지 않은 부속 자료로서 다루게 된다.

1) 합집(composite works), 부록, 특별호를 목록하는 방법은 관련된 저서의 형태로 보아 서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을 때 :

- ㉠ 독립된 자료로 취급하거나(21.28)
- ㉡ ‘중에서’ 분출(‘in’ analytics) 방도를 쓰거나(13.5)
- ㉢ 두 수준 기술법(two level description method) 또는 다단계 수준 기술법(multiple level description method)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13.6).

2) 부속 자료로 처리하는 경우 :

- ㉠ 실체기술에서 처리하거나(1.5E1)
- ㉡ 주기사항에서 내용주기 또는 내용부가 주기로 처리한다(1.7B11).

AACR 2의 특징인 신축성은 관련된 자료를 처리하는 데에도 반영되어 각 서지기관은 지역적인 특수성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고서(early printed books)는 단행본을 다루고 있는 제2장에 추가되어

있으며(규칙 2.12~2.18), 1821년 전에 출판된 단행본, 팜플렛, 낱장으로 된 인쇄물(broadsides)에 관한 기술의 지침으로 한정되어 있다.

#### Ⅳ. 표목, 통일서명, 참조(제 2 부)

제 2 부는 검색요소의 선정(제21장), 표목의 형식(제22장~제25장), 참조(제26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통일된 양식으로 일반규칙을 다루고, 각 규칙에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특정한 상태에 따른 설명과 예가 제시되어 있다. 제 2 부도 제 1 부와 같이 과거의 도서위주의 목록개념에서 벗어나 비도서자료도 도서자료와 동등하게 같은 규칙에 의해서 기입과 표목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 사이의 저작의 책임성을 결정하기가 이론상으로나 실제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AACR 2에서는 이 결점을 보완하여 일련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저자 표목과 단체표목이 일관된 원칙에 의해 결정되고, 미래의 기계배열을 전망하여 표목의 형식과 나열순서가 변경되어 있다.

##### 1. 검색요소의 선정(제21장)

검색요소의 선정은 대개 저작의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의 책임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재편성되어 있다.

###### 1) 일반규칙(21.0)

###### 2) 개인 저자성, 단체명 기입, 서명 기입에 대한 일반 규칙(21.1~21.7):

본 서명의 변경, 저자명 또는 단체명이 변경된 저작, 단일 저작, 또는 단체 책임으로 된 저작, 저자성이 불확실한 저작, 책임이 분담된 저작, 편집자의 지시로 생산된 저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 3) 책임이 혼합된 저작에 관한 규칙(21.8~21.27)

###### 4) 다른 저작과 관련된 저작에 관한 규칙(21.28)

###### 5) 부기입에 관한 규칙(21.29)

###### 6) 특별규칙(21.31~21.39): 법률에 관한 출판물과 종교에 관한 출판물

을 포함하고 있다.

AACR 2 제21장은 AACR 1의 1~19조와 33조에 해당되며, 가장 현저한 발전을 기존 목록 규칙과 같이 기본기입 원칙을 강조하지 않고 별도 표목기입(alternative heading entry) (0.5)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기입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되고 있으며, 기술에 있어서 모든 자료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동등하게 다루는 원칙이 검색요소의 선정에도 적용되어 모든 자료의 검색요소의 선정에 있어서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967년 AACR 1이 발간된 이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검색요소의 선정에 관한 규칙이었다. 1975년에 8년간의 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에는 AACR 1의 제 1 장의 많은 조항이 이미 개정되고 있었다(3, 4, 5, 11, 14조). AACR 2 개정위원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논의되었던 조항은 1조부터 11조까지로서 그 후 AACR 2가 정식으로 나타나기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조항들이다.

AACR 2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은 저자개념이다. 목록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저자의 개념은 좁아져서 개인 저자만을 저자로 인정하고 단체명에 대해서는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AACR 2의 일반규칙은 기본기입의 선정에 있어 개인 저자, 단체명, 서명표목에 대하여 각각 명확하게 그 범위를 표시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AACR 2에서의 저자의 범위는 :

“개인 저자는 저작의 지적 또는 예술적 내용의 창작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예를 들면 책의 저자, 작곡가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의 저자이며, 서지 편찬자는 그 서지의 저자이다. 제도가는 그 지도의 저자이며, 예술가와 사진작가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의 저자이다. 추가하여 연주가는 음반의 저자이며, 영화, 비디오영화는 그 출연자가 저자가 된다.”(21.1A1)

이것은 Eva Verona의 단체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한 것으로 파리원칙의 약점을 보완하여 단체명을 저작자의 범주에서 빼고 저자만을 저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AACR 2에서 단체명을 기본기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21.1B2) :

- 1) 단체의 행정적인 질을 나타내는 운영정책, 절차, 내규 또는 예산, 결산, 직원록, 목록, 재산명세서, 회원록 등
- 2) 입법부, 행정부 간행물로서 국가원수의 포고문, 행정부의 법규조약, 판결문, 의사록 등이다.
- 3) 단체의 집단적인 의견의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보고서, 공문 등
- 4) 회의의 집단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로서 회의록, 탐험보고서, 전시회보고서
- 5) 음반, 영화, 비디오 녹음 등 출연자의 단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다.

끝으로 저작이 위의 범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라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서명기입으로 더욱 제한하고 있다.

AACR 2에서 단체명이 저자 개념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체 저자성이라는 용어는 단체 책임성으로 대체되고, 기본기입에서 단체명은 줄어들고, 개인명과 서명기본기입은 더욱 많아지며, 단체명 부기입이 증가하게 된다.

연속간행물의 기본기입의 선정에 있어 AACR 1의 6조는 저자성의 상태가 아니고 자료의 출판 패턴의 계속성을 표시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고 일반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연속간행물이 도서자료이던 비도서자료이던 같은 일반규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연속간행물에 있어서 단체명 기본기입은 줄어들고 서명기본기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네 상황에서 서명기본기입을 허용하고 있다(21.1C).

- 1) 개인 저작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단체가 저작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 편집자의 지시로 생산된 저작이나 합집인 경우
- 3) 단체가 개입된 저작이나 규칙 21.1B2에 제시된 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저자도 개입되지 않은 저작인 경우
- 4) 종교단체에서 인정된 성전인 경우

AACR 1은 합집인 4조와 5조에서 같은 상태를 무리하게 분리시켜 편찬자를 기본기입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AACR 2에서는 기본기입을 서명어로 하고 있다.

저자성이 불확실한 저작에 있어서 AACR 1의 2A에서는 서명기본기입을 지시하고 있는데 비해, AACR 2에서는 한 단어나 어구를 기본기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A physician', 'Author of ....'를 기본기입으로 승인하고 있다(21.5C).

책임성이 혼합된 저작에 대한 규칙(21.8~21.27)은 AACR 1의 제 1 장에서 단행본 중심으로 다룬데 비하여, AACR 2 제21장에서는 모든 도서관자료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재편성되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 1) 원작의 개작 개정, 번역, 주역, 전기, 비평(21.10~21.15)
- 2) 다른 작품을 개작한 예술작품, 음악작품, 음반(21.16~21.23)
- 3) 신작(21.24~21.27)

다른 저작을 개작한 작품(21.16~21.23)은 재편성으로 인하여 더욱 명확하게 검색요소를 지시하게 되었다. 예술품, 음악작품, 음반에서 작곡가와 연주자의 관계를 예술적 내용의 창작에 대한 책임성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있다(21.23C).

다른 저작과 관련된 저작(21.28)은 AACR 2에서 대시 기입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저작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보유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독립되지 않은 부속자료에 대해서는 1.9조에서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제13장 참조).

부출(21.29~30)에 관한 규칙의 변화는 기본기입의 선정의 변경에 따른 결과로 주요한 변화는 없다. 단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부출이 생겼으며, 참조지시가 부출로 대체된 경우가 있다.

'법률에 관한 출판물'과 '종교에 관한 출판물'(21.31~21.39)에서는 AACR 1까지 상용되어 오던 단체형식 부표목이 AACR 2에 이르러 통일서명어로 발전되었으며, 이것은 AACR 2의 역사적인 공헌이다. AACR 1에서 법과

종교의 규칙에 있어 형식 부표목으로 ‘Laws, Statutes, etc.’ ‘Liturgy and ritual’ 을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AACR 2에 이르러 제거되고 통일서명의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sup>20)</sup> 또한 조약을 다루는데 있어 기본기입 선정에서 모국의 우선 순위가 없어지고 있다.

## 2. 인명표목(제22장)

개인명의 형식에 대한 규칙은 AACR 2에서 대폭적으로 재편성되어 다음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1) 인명의 선정(22. 1~22. 3)
- 2) 인명의 기입요소(22. 4~22. 11)
- 3) 인명에 추가되는 한정어(22. 12~22. 19)
- 4) 구별이 불가능한 이름(22. 20)
- 5) 특수형어 특수언어에 있어서의 인명(22. 21~22. 28) : 아라비아 문자로 된 이름, 버어마인의 이름, 중국인명, 인도인명, 인도네시아인명, 말레이시아인명, 태국인명에 대한 규칙

인명표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같은 사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이름이 사용되거나 또는 둘 이상의 형식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다. 시대와 지역, 언어배경에 따라 같은 인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목록규칙의 주목적은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름을 한 형식으로 목록에서 통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Cutter 이래로 추구되어 온 이상이나 그 실천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성이 개재되어 의도적으로 완전히 일관성 있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는 범위는 본명, 약자로 된 이름, 가명, 익명, 귀족의 칭호, 변경된 이름, 명칭 또는 호칭(appellation) 등이며, 이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AACR 이전의 목록규칙은 공식적인 이름 즉, 본명, 값전명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용되는 이름도 표목으로 인정하였다. 이 어는 방법을 택하든 목록작업에 있어서 표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표제지 이외

20. 상세한 설명은 통일서명에서 다루고 있다.

의 참고자료를 의지하게 되어 있으며, 많은 목록기관은 표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점검하였다. AACR에 이르러 목록의 실용성에 입각하여 인명의 선정에 있어 가장 잘 알려진 이름으로 저자가 상용하고 가장 쉽게 식별되는 성명을 표목으로 채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AACR 1은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완전명(43조)에 대한 규칙은 원칙에 위반되므로 AACR 2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경제성의 이유로 가장 알려진 이름을 채택하는 일반 원칙은 AACR 1에서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LC는 첨가정책을 채택하여 1967년 이전에 설정된 기존 표목에 대하여는 새로운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장 잘 알려지고 통용되는 이름인 Twain, Mark 대신 AACR 이전에 설정된 Clemens, Samuel Langhorne, 1835~1910의 표목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ALA 1949(36조)에 의하면 이 이름에 대하여 이미 첨가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70년간 원칙에 어긋나는 표목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AACR 2는 저자의 이름은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그 어느 것도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므로서 AACR 1에서 실천하지 못한 항목을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하고 있다.

- 1) 저자의 저서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 2) 참고 자료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 3) 최신의 이름

따라서 AACR 2에서 위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각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표목의 선정에 있어 많은 세부적인 부규칙(22.1~22.3 사이)이 변경되어 있다. 인명표목의 선정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변경사항은 AACR 1에서 익명, 가명을 사용하는 저자의 이름을 가장 잘 알려진 익명이나 가명을 표목으로 정하고, 저자가 둘 이상의 이름을 쓰며 그 어느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두 이름을 다 표목으로 정하는 것을 택일규칙으로 하고 있으나(42B), AACR 2는 이 택일규칙을 기본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22.3C3). 이것은 많은 도서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장서량과 장서의 성질에 따라 이용자에서 지

접적인 검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또한 기계가독 목록에서 두 곳 이상에 분리된 표목을 참조 지시로서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됨으로써 문헌단위 검색에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같은 저자의 저서를 한 곳에 병열하기 위하여 약자로 된 이름(22.10)과 한 단어, 어구를 인명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기입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있다. 표제지가

Indiscretions of Dr. Carstairs, by A. De O.인 경우

AACR 1 : 서명(2C)

AACR 2 : A. De. O. (22.10)

The unveiled heart; a simple story/by the author of Early impressions인 경우

AACR 1 : 서명(2C)

AACR 2 : Author of Early impressions (22.11D)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목록상에 드물게 있는 예이므로 전체 목록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마자자로 되어 있지 않은 특정한 인명은 영어로 된 참고자료에 설정된 영어이름을 채택하나 영어로 로마자화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로마자화 된 이름 중 그 어느 것도 우위로 통용되지 않은 경우는 목록기관에서 정한 로마자 표기표에 의해 인명표목을 설정한다(22.3 C1). 성(surname)으로 기입되는 인명은 로마자 표기표에 의하거나 또는 영어 참고자료에서 설정된 이름 중에 하나를 택하는 택일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LC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정하고 있다.<sup>21)</sup>

AACR 1 : Syngman Rhee(44 B1)

AACR 2 : Yi Sung-man 또는 Syngman Rhee의 두 이름 중에 하나를 택하는 택일규칙(22.3 C2) LC는 이승만씨가 모국어로 쓴 저작이던 영어로 쓴 저작이던 전부 Rhee, Syngman으로 표목을 정하게 될 것이다.

성을 포함하지 않은 이름에 추가되는 한정어는 아이슬란드의 지명을 제외

21. Simonton(1979), p. 330.

하고는 심표로서 구분된다.

AACR 1 : John the Baptist (49A)

AACR 2 : John, the Baptist (22.8A)

AACR 1 : Leonardo da vinci (49A)

AACR 2 : Leonardo, da vinci (22.8A)

한정어는 동성명에 생물년, 직업 등을 추가하여 구별하는 장치로서 심표로 구별되어 있는데, John이라는 이름에 부가되는 the Baptist도 한정표시로 간주되어 다른 한정표시와 일관성 있게 단일처리 함으로써 단순화되고 있다.

귀족의 칭호는 본인이 칭호를 항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한다. 그러므로 Lord Byron에는 그의 칭호를 부기시키나 Laurence Olivier의 경우는 그의 만년에 작위가 수여되어 본인의 저서에 작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의 칭호를 표목에 사용하지 않는다.

AACR 1 : Byron, George Gordon, Baron Byron (46.G1)

AACR 2 : Byron, George Gordon, Byron, Baron (22.6A)

AACR 1 : Olivier, Sir Laurence (46.G2)

AACR 2 : Olivier, Laurence (22.6A)

인명표목에 있어 저자가 상습적으로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명이인에 대해서는 완전명을 아는 경우 완전명을 괄호에 기입하여 동명이인을 식별하고 있다.

AACR 1 : Lawrence, David Henry (43.C)

Lawrence, David Herbert

Lawrence, David Horace

AACR 2 : Lawrence, D.H. (David Herbert) (22.16)

Lawrence, D.H. (David Horace)

Lawrence, David H. (David Henry)

목록 파일이 방대한 도서관에서는 완전명을 알지 않고는 Smith 또는 Lawrence 같은 흔한 성과 연결되는 이름을 검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가장 잘 알려진 이름으로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C.P. Snow 또는 T.S. Eliot 같은 사람은 약자로서 통용되는 이름의 예이며

같은 약자로 된 이름이 목록파일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괄호안에 완전명을 기입하여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AACR 2는 목록상에 동명이인이 배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괄호안에 완전명을 기입할 수 있다는 선택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22.16), LC는 이 선택규칙을 채택하여 완전명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완전명을 기입하기로 결정하고 있다.<sup>22)</sup> LC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며 생물일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인명에 생물일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있다.<sup>23)</sup>

기능표시가 부기입 표목에 부가하여 그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기능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규칙으로 하고 있다(21.0D). 이것은 저자의 지적 활동의 표시인데, 기본기입에 추가하지 않은 표시를 부기입에 의해서 기능표시를 한다는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명에도 추가되지 않은 표시이므로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칙이다. 그러나 LC는 계속 기능표시를 부기입에 한해서 인명표목에 추가하는 선택규칙을 택하고 있다.

### 3. 지 명(제23장)

AACR 1에서 단체명에 속하였던 지명이 독립된 장을 이루게 된 것은 이론상 합리적이며 실제 목록규칙의 이용에도 편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표목에 있어서 지리상의 지명표시와 정부의 기능표시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4.3E, 24.6).

지명표목으로서 영어로 된 지명 또는 해당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AACR 2는 영어로 된 지명 또는 영어지명 참고자료에 제시된 이름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칙은 지명에 추가되는 규칙으로서 모든 지명에 대하여 한정어를 부가시키며, 도시명에 대하여는 주명 보다 더 큰 단위의 지역명을 괄호안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명칭을 가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록규칙이 지명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에 대하여 규범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명사전이 지명에 대한 정보원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지명

22. Simonton(1979), p.331.

23. Ibid.

사전은 시대적인 변천에 뒤늦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AACR 1에서 변경된 예를 제시하면 :

AACR 1 : Chicago

Paris

Tokyo (Japan) Minato-ku

AACR 2 : Chicago(III.) (23.4C)

Paris(France) (23.4H)

Minato-ku(Tokyo, Japan) (23.4G)

또한 AACR 2에서는 AACR 1에서 한정어로서 사용하던 약자인 'Eng.' 'Ire.' 'Scot.' 'Ger.'를 포기하고 풀어쓰고 있다.<sup>24)</sup>

#### 4. 단체명(제24장)

단체명 표목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재편성되어 있다.

- 1) 기본 규칙(24.1)
- 2) 여러 형의 단체명(24.2~24.3)
- 3) 정부, 회의, 전시회 등을 포함한 명칭에의 부가, 생략 및 수정(24.4~24.11)
- 4) 종속 및 관련 기관(24.12~24.16)
- 5) 정부기관 및 관직(24.17~24.26)
- 6) 종교단체 및 성직(24.27)

AACR 1 제 3장과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 편성에 있어서 단체명의 형식을 선정하는 일반규칙이 총괄적으로 다루어지고, 다음에 단체명에 추가되는 한정어에 대한 규칙과 종속기관 및 관련된 기관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규칙의 편성에 있어서의 변화로 표목의 형식도 변경되어 있다. 또한 단체명의 편성에 있어 인명표목의 경우와 같이 단체의 특정형에 관한 규칙을 함께 모이게 하지 않고 표목의 특정요소에 관한 규칙을 함께 묶어서 다루기 때문에 규칙을 실제 목록에 적용하는 경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가장 현저한 예는 회의에 관한 규칙이다. AACR 1에서는 모든 회

24. Simonton(1979), p.335.



의에 관한 규칙을 87~9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해, AACR 2에서는 21.1에서 회의의 정의를 살피고 표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24.3B(언어에 관하여) 21.1조와 21.4조(회의명 또는 서명 기입의 선정에 대하여) 24.3F, 24.7, 24.13(표목으로서의 회의명의 구성에 대하여)를 살핀 후에 회의명의 표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ACR 1과 AACR 2는 종속기관을 상위기관의 부표목으로 정할 것인가 또는 상위기관과 연결시키지 않고 종속기관명으로 직접표목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직접 종속 기관명으로 표목을 정하도록 원칙이 세워졌으나 명칭의 성질상, 기관의 기능상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AACR 1은 정부와 비정부기관 사이에 일관된 원칙이 없이 혼동이 야기되며, 규칙의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다. AACR 2는 정부와 비정부 단체의 취급에 있어 통합된 규칙을 제정하도록 시도하였으나 정부단체의 기능과 성질상 분리되어 있으며, 비정부 단체에 대하여는 종속기관을 상위기관의 부표목으로 기입하는 경우를 5형 제시하고(24.13), 정부에 대하여는 정부명 아래 부표목으로 기입하는 경우를 10형으로 제시하고 있다(24.18).

입법부, 재판소, 외교단, 군대와 관직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AACR 1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AACR 2는 아직도 종속기관 및 관련기관의 표목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AACR 1의 단체명 표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로 되어 왔으며, 그 첫째는 이론의 발전에서 오는 문제이고, 둘째는 이론의 결어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오류된 기록을 시정하는데 있어서의 경제성에서 오는 문제이다. AACR 1이 파리원칙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나 단체명에 관한 파리원칙(9.4조) 자체가 애매하고 불분명하며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AACR 이전의 규칙과 파리원칙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북미지역에서 파리원칙에 의한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목록 중 단체표목의 대폭적인 재정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AACR 1은 기존목록규칙과 파리원칙을 절충하여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AACR 1의 단체명 표목에 관한 규칙 중(북미판) 교회, 공공시설

의 기능을 가진 단체명(98~99조)은 지명 다음에 단체명을 기입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잘 알려진 직접적인 특정 단체명 아래 기입한다는 원칙과 파리원칙에서 관용명칭으로 기입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고, 다른 규칙과 일관성이 없으며, 이용자 위주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많은 비판을 받고 1972년에 삭제되었다.

AACR 2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체명 표목의 내용으로서 표목의 순서와 배열에 관한 형식의 변경으로, AACR 1과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명에 관한 표목이 인명에 관한 표목과 일관성 있게 되어 단순하고 용이하게 된 것이다. AACR 1에서도 단체명, 인명의 표목은 직접적인 이름, 잘 알려진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원칙은 98~99조를 제거한 후에도 이론의 결여로 인하여 12개 조항 이상의 변칙이 있어 AACR 2에 이르러 시정되었다.

첫째로, 이들 변화 중 66B조와 67조는 기존목록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지명 아래 기입한 단체명은 직접 잘 알려진 단체명으로 기입

AACR 1 : London. St. Paul's Cathedral (98)

AACR 2 : St. Paul's Cathedral (London) (24.3)

AACR 1 : London. University (99)

AACR 2 : University of London (24.1)

2) 명칭으로 부터의 생략

AACR 1 : Academia de Bellas Artes de San Jorge (66B)

AACR 2 : Real Academia de Bellas Artes de San Jorge (24.1)

AACR 1에서는 왕립을 표시하는 형용사로 시작되는 구라파어의 단체명에서 형용사는 생략되었다.

3) 명칭의 수정

AACR 1 : Du Pont de Nemours (E.I.) and Company (67A)

AACR 2 :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24.1)

AACR 1에서는 약자로 시작되는 단체명은 성을 먼저 기입하고 약자는 원괄호 안에 넣었다.

AACR 1 : Drie October-Vereeniging (67C)

AACR 2 : 3 October-Vereeniging (24.1)

AACR 1에서는 숫자로 시작되는 외국의 단체명은 모국어 낱말로 풀어 써 주었다.

4) 단체명의 약자

AACR 1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62. A1)

AACR 2 : AFL-CIO (24.2D)

AACR 1에서는 Unesco, Euratom과 같은 약성어(略成語 acronym)의 명칭만을 표목으로 인정하였으나, AACR 2에 이르러 대문자만으로 된 약자도 표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5) 사교관구(司教管區)는 그 교회, 교파명 아래에 부표목으로 기입한다.

AACR 1 : Ely (Diocese) (93B3)

AACR 2 : Church of England. Diocese of Ely (24.27C2)

둘째로, 중요한 변화는 단체명의 표목형식이며, 이 변화는 많은 기존 단체명표목에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1) 요소의 순서의 변화로서의 회의의 개최지, 개최년의 순서의 변경과 회의 회기, 회차, 연대표시의 변화이다.

AACR 1 : International Geological Conference, 15th, Pretoria, etc., 1929. (90A-C)

AACR 2 : International Geological Conference (15th: 1929 : Pretoria, etc.) (24.7B4)

AACR 1 : U.S. 87th Congress, 2d session, 1962 (81C)

AACR 2 : United States. Congress(87th, 2nd session: 1962)(24.21D)

2) 단체명에 추가되는 모든 한정어(qualifier)는 원괄호 안에 기입하는 단일형이 적용되고 있다. AACR 1에서는 쉼표(,) 또는 원괄호를 쓰고 있었으나 AACR 2는 원괄호로 통일하고 있다.

AACR 1 : Loyala University, Chicago (AACR 2 에서 새로운 규칙)

AACR 2 : Loyala University (Chicago) (24.4A)

같은 명칭을 가진 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한정어를 추가하고 있으나 단체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한정어를 부가시킬 수 있다는 선택규칙이 마련되어 있다(24.4C1).

- 3) 명칭으로부터의 생략 : 관사로 시작되는 단체명은 문법상의 이유로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사를 생략

AACR 1 : The Club, London (66)

AACR 2 : Club(London) (24.5A)

AACR 1은 단체명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관사가 부가되어 있으나 배열상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

셋째, 지명과 정부에 관한 규칙이 독립하여 다른 장을 이루었으므로 지명과 정부의 한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표목에 있어서 지리상의 지명표시와 정부의 기능표시를 구별하게 되므로, AACR 1에서 영국정부의 표목을 Great Britain으로 하던 것은 지명표시이므로 United Kingdom으로 수정되고 있다(24.3E). 또한 미국 정부의 표목을 U.S.로 약자로 하던 것을 United States로 풀어 쓰도록 변경되어 있다. AACR 1의 '생략할 수 있는 지명'의 항목은 AACR 2에서 제거되고, 모든 지명과 정부명에 대한 표목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표목에 있어서의 약어의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AACR 1 이전에 사용하던 Dept.는 Department로 풀어 쓰도록 되어 있다(부록 B 약어 참조). 다만 LC는 U.S.와 Dept.의 약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있다.<sup>25)</sup> 또한 United Kingdom 대신 Gt. Brit.도 계속 사용될 것이다.<sup>26)</sup>

그 외의 변경은 비로마자의 단체명에 대하여는 택일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채택한 일정한 로마자 표기방식에 의해 모든 명칭을 일률적으로 로마자화하거나(LC는 이 방법을 택하였음), 또는 단체 자체의 로마자화 형식에 따라 그 명칭을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25. Ibid.

26. Simonton(1979), p.336.

## 5. 통일서명(제25장)

통일서명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 1) 통일서명의 사용 (25. 1)
- 2) 일반규칙
  - a. 기본 규칙(25. 2)
  - b. 개별 서명(25. 3~25. 7)
  - c. 전집 서명(25. 8~25. 12)
- 3) 특별 규칙(25. 13~25. 36)
  - a. 필사본과 초판본(incunabula) (25. 13~25. 14)
  - b. 법률(26. 16~25. 16)
  - c. 성전(25. 17~26. 18)
  - d. 전례서(25. 19~25. 23)
  - e. 교황청의 공문서(25. 24)
  - f. 악보(25. 25~25. 36)

통일서명의 편성은 통일서명이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AACR 1에서 분리되었던 제 4장과 제13장이 통합되어 있으며, 법과 전례에 관한 자료가 검색요소로서 단체의 형식 부표목에서 제거되고 통일서명으로 전환됨에 따라 역사적인 오류가 시정되고, 이 장에서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 통일서명 :

- 1) 특정한 저작의(여러권, 번역판 등) 모든 기입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 2) 서명이 표제지상에서 다양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전집과 합집에 대하여 그 저작을 한곳에 모이게 하고(works, selections).
  - 3) 논리적인 배열위치를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장치이다.
- AACR 이전의 규칙에서는 통일서명 원칙을 성경과 음악자료에 적용하였으나 AACR 1에서 그 범위를 넓혀 고전, 법전, 무저자 저서, 번역서, 전집, 필사본, 저작의 일부분 등에 적용하였다. AACR 1에서 통일서명에 대한 이

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으므로, AACR 2에서도 같은 기본원칙에 의해서 통일서명의 선정과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칙의 적용은 도서관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고, 장서의 성격과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AACR은 통일서명의 일반적인 적용이라는 입장에서 제정되었으므로, 국가서지기관은 이 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AACR 1과 AACR 2 사이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악보의 통일 서명이다. AACR 1에서 통일서명의 설정에 있어 음악과 다른 자료 사이에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악보의 통일서명이 전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완전 개정되어 있다. AACR 2에서 통일서명의 선정과 형식에 있어 변경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규칙 :**

- 1) 저작의 일부분 : 한 저작의 일부분이 분리되어서 출판되고, 그 저작의 서명이 분명한 경우 전체의 서명에 종속된 부분인 부표목이 아니고 독립된 부분으로 다루게 된다.

AACR 1 : Tolkien, J.R.R.

The lord of the rings. 2. The two towers (106A1)

AACR 2 : Tolkien, J.R.R.

The two towers (25.6A)

이 규칙은 성전, 음악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AACR 1에서는 저자의 각종 문학형식에 의한 저작선집에 대하여서 'selections'를 쓰고, 단일문학 형식만의 선집에 대하여서는 'selected works'라는 통일서명을 사용하여 그 수록 내용을 구별하였으나 AACR 2에서는 모든 선집에 대하여 'selections'로 통합하고 있다.

**특별규칙 :**

- 1) 법률에 관한 자료 : AACR 1 이전에는 헌법, 법, 재판소 규칙, 국제 조약 등에 관한 자료를 검색요소로서 단체의 부표목으로 기입하였으나 통일서명으로 시정되고 있다. 법률에 관한 규칙은 다음의 셋으로 구별된다.

- a) 'laws, etc.'는 기존 부표목 'laws, statutes, etc.' 'ordinances, local laws, etc.'와 'laws, by laws, etc.'를 대표한 것으로 새로운 규칙이다.

AACR 1 : U.S. Laws, statutes, etc. (20)

United States code...

AACR 2 : United States (25.15A1)

[Laws, etc.]

United States code...

- b) 주제명으로 편찬된 법령집

AACR 1 : California. Laws, statutes, etc.

West's California agricultural code...

AACR 2 : California (25.15A1)

[Agricultural code]

West's California agricultural code...

- c) 단일 법령

AACR 1 : Gt. Brit. Laws, statutes, etc. (101D)

[Field Monuments Act]

AACR 2 : United Kingdom (25.15A2)

[Field Monuments Act]

조약(25.16)에 관한 통일서명은 AACR 1의 형식 부표목의 내용과 유사하다.

- 2) 성전에 관한 규칙은 유대 성전의 접거로서 과거의 Jewish Encyclopaedia를 Encyclopaedia Judaica로 대체하고 있다. 불교성전에 대한 규칙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있다. 불교 경전집에 대하여는 Tipitaka를 통일표목으로 사용하며, 대경전을 구성하는 경과론은 불교경전집의 부표목으로 기입한다.

AACR 1 : Abhidhammapitaka (116)

AACR 2 : Tipitaka. Abhidhammapitaka (25.18F1)

- 3) 전례서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의 변화는 법에 관한 규칙의 변화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Liturgy and ritual'의 부표목이 제거되어 있다.

AACR 1 : Church of England. Liturgy and ritual (119)

[Book of common prayer]

AACR 2 : Church of England (25.19)

[The book of common prayer]

- 4) 악 보 : 악보의 통일서명에 관한 규칙은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음악은 음악작품이 다른 언어와 많은판이 표제지상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ACR 2에서는 서명과 작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b) AACR 1에서는 통일표목을 위한 언어의 선택에 있어 7언어 중에서의 한 언어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235.1), AACR 2는 작곡가의 원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25.27A).

c) 특정한 연주 수단에 의한 각종 형태의 작품을 포함한 전집에는 그 연주 수단으로 직접 기입한다.

AACR 1 : [Works, orchestra] (239)

AACR 2 : [Orchestra music] (25.36A)

d) 새로운 규칙으로서 음악작품이 형식명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 작곡가가 단 하나의 작곡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작품으로 된 악보라도 복수형을 쓴다.

AACR 1 : [Quintet...] (236)

AACR 2 : [Quintets...] (25.27B)

AACR 2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변화에 따라 통일서명의 배열요소의 선택과 배열 위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있다.

1. 단수가 복수형으로 변경

AACR 1 : [Iliad. Book 1—6] (106B)

AACR 2 : [Iliad. Books 1—6] (25.6B1)



## 2. 날짜 표시의 변경

AACR 1 : Denmark. Treaties, etc. Gt. Brit., Mar. 3, 1966 (25)

AACR 2 : Denmark

[Treaties, etc. United Kingdom, 1966 Mar. 3] (25.16B1)

## 3. 편, 장 및 역의 번호의 위치 변경

AACR 1 : Bible. N.T. 1 Corinthians (109A)

AACR 2 : Bible. N.T. Corinthians, 1st (25.18A3)

## 4. &amp;가 쉼표로 변경

AACR 1 : [Sonatas, violin &amp; piano...] (236A3)

AACR 2 : [Sonatas, violin, piano...] (25.29A3)

## 5. 숫자의 배열위치 및 표현 변경

AACR 1 : [Scherzo, 2 flutes &amp; 2 clarinets...] (236A3)

AACR 2 : [Scherzos, flutes(2), Clarinets(2)...] (25.29A4)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기계배열과 수동배열은 더욱 논리적이고 단순하게 되었다.

검색요소의 마지막 장인 참조(제26장)는 전장의 규칙의 변화에 따른 참조 지시의 변화로서 필연적인 반영이다. 전장의 규칙을 종합함으로써 참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부록은 대문자 사용법, 약어, 숫자, 용어해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의 세 부록은 전장의 규칙과 같이 각 조항에 대하여 숫자가 매겨져 있고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의 범위는 미미하다.

용어해설에 있어서는 AACR 1 제 6 장(단행본)의 개정이 ISBD(M)을 채택하여 이미 용어상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으므로 ISBD(G)의 채택으로 인한 용어상의 변화는 비교적 적으며,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는 해당 규칙에서 지적되어 있다.

## V. 결 론

AACR 2에 이르러 목록과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도서관 실무자는 보다 논리적인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AACR 2는 목록작성에 편리하도록 일관성 있게 구성되고, 각 규칙의 내용도 상세하고, 예도 많이 제시되어 보다 명료하게 표현된 규칙이다. 그러나 AACR 2를 실제 목록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선택규칙과 택일규칙의 결정이며 둘째, 개정규칙의 변화에 따르는 기존목록과의 관계이다.

AACR 2는 현재의 도서관협동(library cooperation)과 조직망(network)의 환경에서 목록의 표준화를 수행하는 동시에 개개 도서관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른 목록 이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어느 규칙보다 신축성을 강조하여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결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정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나 봉사를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반드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각 국가목록기관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하여 새규칙의 선택규칙과 택일규칙의 적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각 도서관은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목록규칙에 의하여 기본적인 일련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AACR 2에서 마련한 택일규칙과 선택규칙을 선택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ACR 2는 기존 목록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존목록을 동결하고 새규칙을 완전히 채택하느냐, 또는 새규칙을 기존목록과 통합한다면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AACR 2의 부분적인 채택, 점차적인 채택, 또는 새롭게 설정되는 표목에 대하여 새규칙을 적용하되 기존표목에 대하여는 기존규칙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이중방안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국가목록기관은 새규칙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와 계획을 세우고, 1981년 1월 1일까지 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새규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결정할 것이며, 이것은 네 나라의 Shared data base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대의 목록규칙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정되며 특정한 언어, 문화적인 전통에 의한 이용자의 요청에 대응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국가목록기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AACR 2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언어, 지역, 사회 관습이 다를지라도 AACR 2의 이론과 원칙에 근거를 두고, 우리 도서관의 배경에 맞는 한국 목록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적으로 AACR 2의 적용에 대한 지침이 없는 이 시점에서 AACR 1을 기초로 양서목록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도서관 장서의 성질, 기존목록의 내용, 현목록의 형태,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 목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련의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기초를 두고 영어자료 뿐만 아니라 동양자료의 목록도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새규칙을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목록이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1967),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t al.,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2. —. *Chapter 6 : separately published monographs*(1974),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t al.,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3.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78),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t al., 2nd ed., Chicago: ALA.
4. Gorman, Michael (1978),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2 : 209~226.
5. Hagler, Ronald (1979), "Where's That Rule? a Cross-Index of the Two Editions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corporating a Commentary on the Second Edition and on Changes from Previous Cataloging Standards,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6. Simonton, Wesley (1979), "An Introduction to AACR 2,"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3 : 321~339.

---

## A Study on the Second Edition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Yong Sun Chung\*

The second edition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AACR 2) was published in December 1978. In 1974 representatives of five bodies from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and set the aims, structure, and content of AACR 2. Although the goal of a single text for Britain and North America was achieved in AACR 2, the American library community expressed concern about cost-effectiveness of adoption of the new code, and consequently the LC implementation plan called for some minor departures from AACR 2. LC's plan to depart from a number of provisions of the new code will cause a continuation of the problems presented by past practices of superimpos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sions made in AACR 2 in th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efforts of Korean librarians seeking to focus on the major questions requiring discussion and decisions before adoption of AACR 2 by Korean research libraries who have already adopted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for Western materials. In this paper attempts were made to follow the order of subjects treated in the code,

---

\*Full-time,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beginning with general revision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each of the parts of the code, the first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and the second for choice and form of access points. The differences between AACR 1 and AACR 2 that will be most significant to cataloguers are compared with examples. Comparative analysis of optional and alternative rules are viewed from a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for the different types of libraries / or materials are discussed. Specifications of the options adapt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are presented.

Adaption of AACR 2 poses continual problems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t sets of information consistently presented in the catalogue regardless of its language. The recognition by cataloguers of the urgent need for conformity and compatibility of catalogue between Western materials and Oriental materials is recommended, if AACR 2 is to be adapted. It would be intolerable for the catalogue users, if different standards of description and headings were to apply in the same catalogue.